

ORIGIN CASE

Vol.
16

I

화학반응

- 1-1 식물용 비료 개량제
- 1-2 식품용 아미노산(글리신)
- 1-3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 1-4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

II

혼합

- 2-1 프로필렌 엘라스토머
- 2-2 제초제
- 2-3 피부 보습 로션
- 2-4 콘크리트용 혼화제

III

정제

- 3-1 분석용 등급 아세트니트릴
- 3-2 정제 설탕
- 3-3 산화방지제
- 3-4 해바라기유·카놀라유 혼합 오일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 본 발간물은 미국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법적 효력이 없음 *

CONTENTS

목차

VOL. 16

I

화학반응

1-1	식물용 비료 개량제	8
1-2	식품용 아미노산(글리신)	12
1-3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15
1-4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	18

II

혼합

2-1	프로필렌 엘라스토머	24
2-2	제초제	28
2-3	피부 보습 로션	32
2-4	콘크리트용 혼화제	35

III

정제

3-1	분석용 등급 아세트니트릴	40
3-2	정제 설탕	44
3-3	산화방지제 (Octamine R)	47
3-4	해바라기유·카놀라유 혼합 오일	50





미국 실질적 변형 판정 기준

《미국의 원산지 제도》

- ☑ 미국의 원산지 제도는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가 서로 다른 목적과 법적 근거, 판정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음
 - 특혜 원산지: FTA 또는 특정 특혜 관세 제도하에서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
 - 비특혜 원산지: 원산지표시, 무역구제조치 적용 등의 특정 통상 정책 목적

《실질적 변형 기준》

- ☑ 수입물품에 대한 특정 통상 정책 목적상 원산지를 판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 C.F.R. § 134.1에 따른 실질적 변형 기준이 활용됨
- ☑ 다만, 실질적 변형에 대한 법령상 특정 기준은 없으며, 여러 판례를 통해 물품의 명칭, 특성 및 용도가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음
- ☑ 실질적 변형의 판단은 명칭, 특성 및 용도와 함께 기타 여러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음
 - ① 명칭(Name)의 변화
 - 명칭의 변화는 명칭, 특성 및 용도 중 가장 설득력이 낮은 요소로 여겨짐
 - 통상 명칭의 변화만을 근거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② 특성(Character)의 변화
 - 특성이란 통상 개체를 형성하고 다른 것과 구별 가능하게 하는 구조, 형태, 원재료 또는 기능 등과 관련한 본질적 요소를 의미
 - 일반적으로 물품 자체 또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품이 가진 특성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 ③ 용도(Use)의 변화
 - 수입 시점에서 예정된 물품의 용도와 수입 후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의 용도 사이에 대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 수입 시 예정되어 있던 용도와 수입 후 공정이 완료된 후의 용도가 동일하거나 대체 가능하다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
 - ④ 제조·가공 공정의 성격
 - 수입 후의 제조·가공이 “복잡한 공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공정”인지 여부
 - 공정의 복잡성 판단에는 작업시간, 노동자의 숙련도, 공정 단계, 공정 수준, 공정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⑤ 비용 및 부가가치
 - 최종제품 및 최종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및 비용의 비교
 - 다만, 부가가치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할 만한 최소 수준에 대해 언급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실질적 변형을 설명하기 위한 부차적 수단으로 활용
 - ⑥ 기타 고려 요소
 - 세번변경 여부, 소프트웨어의 가치, 제품의 설계 및 개발에 포함된 자원 등 사안 및 품목별로 총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여러 증거들을 검토



Origin Case 해석 가이드

《발간물의 목적》

- ⊙ 본 발간물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사전심사 결정문을 번역·분석하여 실질적 변형 기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고, 수출물품의 비특혜 원산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데 필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례 해석 유의사항》

- ⊙ CBP는 실질적 변형 여부를 제조공정도, BOM, 원가구성표, 카탈로그 등 신청인이 제출한 제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외형상 동일하거나 유사해 보이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 ⊙ **결정문에는 해당 물품의 사실관계가 완전하게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보다는 자사 물품의 구체적 상황과 비교·검토하여 특정 원산지에 관한 입증 논리와 검토 방향을 확보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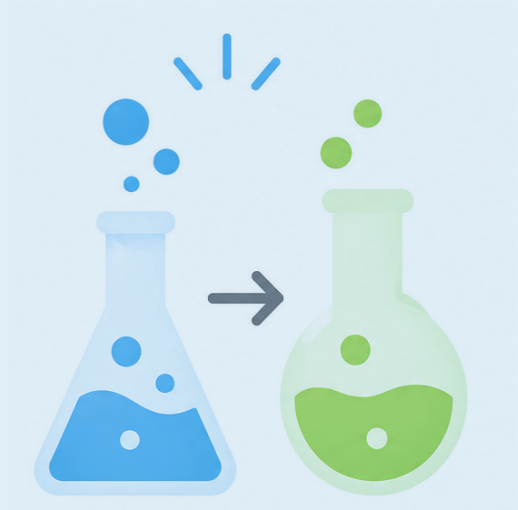
《종합적 판단 가이드 (예시)》

Step 1 선행 결정례 검색	목적	• 자사 제품과 유사한 선행 사례를 찾아 참고																														
	방법	• CBP CROSS 사이트에서 물품명, HS Code, 핵심 재료 등 키워드 검색																														
Step 2 판정 논리 분석	목적	• CBP가 해당 사례에서 핵심 결정 요인으로 본 요소 파악																														
	분석 포인트	• 실질적 변형을 인정/부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 어떤 재료나 공정을 "핵심"으로 보았는가? • "단순"하다고 평가한 작업은 무엇인가? • 본질적 특성의 변화를 어떻게 판단했는가?																														
Step 3 자사 상황과 비교	비교 매트릭스 작성 (예시)																															
	<table><tr><th>비교 항목</th><th>유사 사례</th><th>자사 제품</th><th>차이의 영향</th></tr><tr><td>주요 원재료</td><td></td><td></td><td></td></tr><tr><td>핵심 공정</td><td></td><td></td><td></td></tr><tr><td>제조 국가</td><td></td><td></td><td></td></tr><tr><td>공정의 복잡성</td><td></td><td></td><td></td></tr><tr><td>부가가치</td><td></td><td></td><td></td></tr><tr><td>최종 물품 용도</td><td></td><td></td><td></td></tr></table>				비교 항목	유사 사례	자사 제품	차이의 영향	주요 원재료				핵심 공정				제조 국가				공정의 복잡성				부가가치				최종 물품 용도			
	비교 항목	유사 사례	자사 제품	차이의 영향																												
	주요 원재료																															
	핵심 공정																															
	제조 국가																															
	공정의 복잡성																															
부가가치																																
최종 물품 용도																																
Step 4 판정 신뢰도 및 대응 시나리오 확정	사례 신뢰도 평가 및 대응 시나리오 (예시)																															
	신뢰도	판단 기준	대응																													
	높음	• 유사 사례가 많고, 판정 논리가 명확하며, 자사와 조건이 거의 동일	• 내부적으로 원산지 판단 진행 • 사후 검증 대비 자료 준비																													
	중간	• 유사 사례가 있으나 일부 조건이 다르거나, 판정 논리에 해석의 여지 있음	• 전문가 자문 고려 • 추가 유사 사례 조사 • 보수적 접근 권장																													
	낮음	• 유사 사례가 없거나, 사례 간 판정 결과가 엇갈리거나, 자사 제품이 회색지대에 있음	• 사전심사 신청 적극 검토 • 전문가 자문 검토 필수 • 대안 시나리오 마련 필요																													

I 화학반응

화학 반응에 따른 화학구조, 정체성 및 용도의 변화가 실질적 변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선정

- 1-1. 식물용 비료 개량제
- 1-2. 식품용 아미노산(글리신)
- 1-3.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 1-4.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



식물용 비료 개량제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HQ H327577 (2024.05.08.)
- 쟁 점 사 항: USMCA 특혜, USMCA 원산지 표시 및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캐나다
- 최종 원산지: USMCA 특혜 및 제301조: 캐나다
USMCA 원산지 표시: 중국



II 사실관계

용도	• 식물의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병원균과 해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비료 개량제		
재료		중국	• 키토산 플레이크
		캐나다	• 물 • 구연산(citric acid) • 젖산(lactic acid) • 안식향산칼륨(potassium benzoate)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중국  키토산 플레이크 생산 Manufacturing ▾  캐나다  STEP 1 키토산 플레이크 수입 STEP 2 젖산 또는 구연산 첨가 STEP 3 산-염기 반응 STEP 4 기타 물질과 혼합 및 여과 STEP 5 식물용 비료 개량제 완성 Export ▾  캐나다 최종 수출		
상세 공정		중국	• 키토산 플레이크 생산 - 키토산은 새우, 바닷가재, 게 등 갑각류의 외골격에서 얻어지는 키틴에서 유래
		캐나다	• 키토산 플레이크에 젖산 또는 구연산 첨가 • 젖산 또는 구연산 첨가에 따른 산-염기 반응으로 키토산의 아민 작용기가 R-NH ₂ 에서 쯔비터이온성 아민 형태인 R-NH ₃ ⁺ 로 전환되어 화학구조가 변화하고, 불용성 플레이크가 수용성 액상 형태로 전환 • 캐나다산 물, 구연산, 젖산, 안식향산칼륨 등을 키토산 액체와 혼합 및 여과 • 최종제품 생산

III 판정 결과

《신청인의 주장》

- ☉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염기 반응에 의해 중국산 키토산 플레이크의 특성이 변형되며, 이러한 반응은 화학 반응에 해당하므로 USMCA에 따른 특혜, USMCA 원산지 표시 및 제301조 관세 적용 목적상 원산지가 모두 캐나다라고 주장

《CBP의 판정 ① - USMCA 특혜》

- ⊙ 최종제품 생산을 위해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비원산지 재료가 협정에서 규정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3913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 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중국산 키토산 플레이크와 최종제품의 HS Code 4단위가 제3913호로 동일하므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 다만, 제39류 및 제40류의 물품으로서 하나 이상의 USMCA 국가 영역에서 일어난 화학반응의 결과로 생성된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함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에서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다음 사항들은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캐나다에서의 공정을 통해 키토산의 아미노기가 $R-NH_2$ 에서 $R-NH_3^+$ 로 전환되는 화학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며, 이러한 공정은 화학반응 제외 공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USMCA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음

→ USMCA 특혜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캐나다

《CBP의 판정 ② - USMCA 원산지 표시》

- ⊙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19 C.F.R Part 102에 따른 별도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며, 제3913호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국내산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4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중국산 키토산 플레이크와 최종제품의 HS Code 4단위가 제3913호로 동일하므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 USMCA 원산지 표시 규정상 세트 상품을 제외하고 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상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단일 재료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함
-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재료가 중국산 키토산이고 해당 키토산이 완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로 판단되므로, USMCA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임

→ USMCA 원산지 표시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

《CBP의 판정 ③ - 제301조 적용》

- ⊙ 중국산 키토산 플레이크는 캐나다에서의 공정을 통해 명칭, 특성 및 용도가 변화하므로, 최종제품의 제 301조 적용 목적 원산지는 캐나다임
 - (명칭) 키토산 플레이크는 비료 개량제로 명칭이 변화함
 - (특성) 젖산 또는 구연산과의 화학반응으로 키토산의 아민 작용기가 R-NH₂에서 R-NH₃⁺로 전환되어 화학구조가 변화하고, 물리적으로도 불용성 플레이크에서 완전히 용해된 액상 현탁액으로 전환됨
 - (용도) 키토산 플레이크는 살균제로서 제한적인 농업적 용도를 가지는 반면, 최종제품은 극심한 고온·저온에서 식물의 생존을 향상시키고 증산작용을 줄이는 등 비료 개량제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용도가 변화함

➔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캐나다

IV 시사점

- ⊙ 동일한 물품이라도 USMCA 특혜, 원산지 표시 및 제301조 관세 등 적용 법령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하어 서로 다른 원산지 판정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 화학제품의 실질적 변형 판단에서 화학반응에 따른 화학구조의 변화는 중요한 판단 요인이며, 화학반응과 함께 원재료의 명칭·특성·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CBP의 참고 판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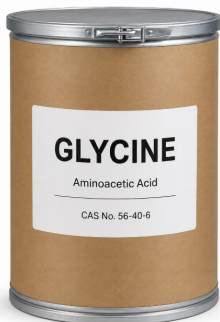
물품명	비료 보조제
사례번호	NY N317486 (2021.03.09.)
쟁점사항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기타 국가] - 결정성 분말인 NBPT(N-Butylthiophosphoric triamide) 생산 • [캐나다] - NBPT 분말에 특정 용매, 첨가제, 착색제 등을 배합하여 액상으로 전환 - 제품의 물리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험 수행 - 최종 액상 비료 보조제 생산
신청인 주장	• NBPT는 그 상태 그대로 비료 보조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밀한 배합 및 가공을 거쳐야만 농업용 비료 보조제로서 기능할 수 있음 • 가공을 통해 자극적인 냄새가 완화되고 상온 보관이 가능해짐
판정 결과	• 최종제품의 유효성분은 NBPT 하나뿐이며, 다른 성분은 용매, 첨가제, 착색제 등으로 NBPT의 기능을 보조할 뿐임 • 캐나다에서의 공정을 통해 분말이 액체 상태로 전환되어 보다 쉽게 분산될 수 있게 되지만 유효 성분의 화학적 명칭과 구조는 변화하지 않음 • 즉, 액상화, 분산성 향상, 냄새 완화 등의 변화가 있더라도, 명칭, 특성 및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NBPT의 원산지로 유지됨

유의사항: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과정 등)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식품용 아미노산(글리신)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NY N340424 (2024.09.10.)
- 쟁 점 사 항: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한국
- 최종 원산지: 한국



II 사실관계

용도	• 식품용 감미료로 사용되는 비필수 아미노산		
재료		중국	•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CAS No. 14783-68-7)
		한국	• 염산 (CAS No. 7647-01-0)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중국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생산 Manufacturing ▾  한국  STEP 1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수입 STEP 2 염산 첨가 STEP 3 산성화 반응 STEP 4 글리신 생산 Export ▾  한국 최종 수출		
		중국	•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생산
상세 공정		한국	• 중국산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수용액에 염산 첨가 • 산성화를 통해 화학반응 발생 • 글리신 생산 (CAS No. 56-40-6)

III 판정 결과

《신청인의 주장》

- ⊙ 한국에서의 공정을 통해 생산된 글리신은 중국산 원재료인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와 CAS 번호가 상이하며, 화학반응을 통해 새로운 명칭, 특성 및 용도를 가진 물품으로 변형되므로 한국이 원산지임

《CBP의 판정》

- ⊙ 한국에서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수용액을 염산으로 산성화하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이 발생하여 별개의 화학물질인 글리신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글리신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판정함

→ 실질적 변형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한국

Ⅳ 시사점

- ⊙ 실질적 변형 판단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원재료와 구별되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성되는 것은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화학반응이 명시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물리적 가공·혼합 공정이라도 개별 원재료가 기존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명칭, 특성 및 용도를 가진 상업적 제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될 수 있음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식품용 BCAA 분말
사례번호	NY N342266 (2024.09.11.)
쟁점사항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중국] - 류신, 이소류신, 발린, 해바라기 레시틴 생산 • [한국] - 특정 비율, 시간, 온도에서 분쇄, 체질, 혼합, 분류, 건조 공정 수행 - 2차 혼합 및 체질 공정을 통해 외관, 입자크기, 수분 함량 비율 확인 - 3차 혼합 및 체질 공정을 통해 외관 및 수율 관련 기준 확인 - 최종 검사 및 포장
판정 결과	• 중국산 류신, 이소류신, 발린 및 해바라기 레시틴은 한국에서의 제조 공정을 거치면서 개별 원재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명칭, 특성, 정체성을 가진 BCAA 혼합 조제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유의사항: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공정 등)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NY N324313 (2022.03.04.)
- 쟁 점 사 항: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한국
- 최종 원산지: 한국



II 사실관계

용도	•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양극재		
재료		중국	• 황산코발트 • 황산망간 • 수산화리튬 • 독점 물질 3
		한국	• 수산화나트륨
		호주	• 황산니켈
		일본	• 독점 물질 1
		독일	• 독점 물질 2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중국  Precursor 전구체 생산 Manufacturing ▾  한국  BATTERY CATHODE MATERIAL STEP 1 중국산 전구체 수입 STEP 2 양극활물질 생산 STEP 3 도핑 공정 수행 STEP 4 완제품 생산 Export ▾  한국 최종 수출		
상세 공정		중국	• 전구체 생산 -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수산화나트륨을 특수 제조 공정을 통해 반응시켜 전구체 생산
		한국	• 중국산 전구체 수입 • 양극활물질 생산 - 중국산 전구체와 수산화리튬을 혼합한 후 고온 소성하여 양극활물질 생산 • 도핑 공정 수행 - 양극활물질에 독점 물질 1,2,3을 첨가하고 고온 소성하여 도핑 • 완제품 생산 - 도핑된 양극활물질에 독점물질을 이용한 코팅 공정을 수행하여 최종제품 생산

III 판정 결과

《CBP의 판정》

- ⊙ 중국산 전구체는 한국에서 수산화리튬과 반응 및 후속 제조 공정을 거치면서 화학반응에 의해 기존과는 구별되는 화학구조, 화학식 및 CAS 번호를 가진 양극활물질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명칭, 특성 및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 실질적 변형에 따른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한국

IV 시사점

- ⊙ 양극재의 실질적 변형 여부는 혼합·가열·도핑·코팅 등 공정의 형식 자체보다, 해당 공정을 통해 실제 화학 반응이 발생하여 전구체 또는 중간재가 기존과 구별되는 화학구조·화학식·CAS 번호를 가진 새로운 물질로 전환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인으로 작용함
- ⊙ 중간재가 이미 양극재 계열의 물질이라 하더라도, 후속공에서 소성·도핑·코팅 등의 공정을 거쳐 화학 구조·화학식 등 물질의 화학적 정체성이 변화하고 특정 최종 용도에 적합한 물질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될 수 있음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사례번호	NY N341585 (2024.08.14.)
쟁점사항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중국] - 무기 전구체 화합물(니켈, 망간 등), 리튬 화합물, 도펀트 혼합 - 혼합물을 일정 온도, 일정 시간 동안 가열 - 양극재 중간재 생산 • [한국] - 중국에서 첨가된 물질과는 다른 물질을 사용하여 도핑 및 혼합 - 일정 온도, 일정 시간 동안 가열 후 세척 - 붕산(boric acid) 코팅 후 추가 가열 - 도핑 및 코팅된 양극재 완성
판정 결과	• 특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국산 물질은 한국에서의 공정을 통해 화학구조, 화학식 및 CAS 번호가 변화하므로 특성의 변화가 발생함 • 용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생산된 물질은 다양한 양극재로 사용될 수 있는 중간재에 가깝지만,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하기에는 특별히 적합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수행된 공정을 통해 이러한 용도에 적합하게 되므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함 • 한국에서의 공정을 통해 중국산 물품의 특성 및 용도가 변화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유의사항: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공정 등)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NY N344847 (2025.01.16.)
- 쟁 점 사 항: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캐나다
- 최종 원산지: 캐나다



II 사실관계

용도	• 지붕, 실내벽, 외벽 등의 단열을 위한 스프레이 시공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폼 제조용 프리폴리머		
재료		중국	• 고분자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Polymeric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PMDI)
		미국	• 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Poly(eth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polyol]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중국 PMDI 생산 Manufacturing  캐나다 Export  캐나다 STEP 1 PMDI 공급 탱크 가열 STEP 2 Polyol을 계량펌프에 연결 STEP 3 정밀 계량 및 혼합 STEP 4 품질검사 STEP 1 PMDI 드럼·토트에 Polyol 첨가 STEP 2 교반기 설치 STEP 3 혼합 STEP 4 품질검사 최종 수출		
상세 공정		중국	• PMDI 생산
		미국	• Polyol 생산
		캐나다	• 중국 및 미국산 원료 수입 • In-line reaction, Drum/Tote reaction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생산 - In-line reaction 방식 1) 중국산 PMDI를 공급탱크에서 가열하고 계량펌프에 연결 2) 미국산 polyol을 별도의 계량펌프에 연결 3) PMDI와 polyol을 각각 정밀 계량하여 인라인 반응기에 공급 4) 혼합·반응을 통해 새로운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 생성 5) 품질검사 - Drum/Tote reaction 방식 1) 중국산 PMDI가 들어 있는 드럼·토트에 특정 양의 polyol 첨가 2) 교반기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속도로 교반 3) polyol의 OH 작용기가 PMDI와 반응함으로써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 생성 4) 품질검사 • 미국으로 수출

III 판정 결과

《CBP의 판정》

- ⊙ 중국산 PMDI와 미국산 polyol은 In-line reaction 공정 또는 Drum/Tote reaction 공정 중 발생하는 화학반응으로 인해 새로운 우레탄 결합이 생성되며, 생산된 물품은 중국 및 미국산 원료와는 화학적으로 다른 상이한 상품에 해당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해당 공정이 이루어진 캐나다임

→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캐나다

IV 시사점

- ⊙ 동일한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제조방식이 서로 다르더라도, 각 공정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새로운 화학 결합이 형성되고 명칭·특성·용도가 다른 새로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될 수 있음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
사례번호	NY N338752 (2024.04.04.)
쟁점사항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중국] - PMDI 생산 • [미국] - Polyol 생산 • [캐나다] - 중국 및 미국산 원료 수입 - Batch reaction 공정 수행 ☞ 반응기 내부 공기와 수분을 질소로 제거한 후 PMDI 투입 ☞ PMDI의 점도를 낮추고 반응속도를 높이기 위해 적정 온도로 가열 ☞ polyol을 반응기에 첨가하여 반응시켜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 생산 ☞ 품질검사 및 포장
판정 결과	• PMDI와 polyol은 Batch reaction 공정을 통해 새로운 우레탄 결합을 형성하는 화학반응을 거치게 되며, 이로 인해 각각의 원료와는 상이한 새로운 상품으로 변형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캐나다임

유의사항: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공정 등)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Ⅱ 혼 합

단순 혼합, 희석부터 정해진 배합에 따른 제형화까지 혼합의 정도와 원재료의 정체성 유지 여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는 사례 선정

2-1. 프로필렌 엘라스토머

2-2. 제초제

2-3. 피부 보습 로션

2-4. 콘크리트용 혼화제



프로필렌 엘라스토머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HQ H322922 (2025.01.28.)
- 쟁 점 사 항: USMCA 특혜,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중국, 대만 또는 멕시코
- 최종 원산지: USMCA 특혜: 멕시코
USMCA 원산지 표시: 일본
일반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일본



II 사실관계

용도	• 자동차 부품(트림, 내장 패널, 커버), 칫솔 손잡이, 배수관 연결부 및 호스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재료		
재료		일본	• 열가소성 가황물(thermoplastic vulcanizate; TPV) • 광유(mineral oil)
		중국	• 광안정제(light stabilizers) •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이형제) • 이산화티타늄(착색제)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중국  광안정제,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이산화티타늄 생산 일본  열가소성 가황물 및 광유 생산 → Manufacturing ▾ 대만 중국 멕시코  STEP 1 일본 및 중국산 재료 수입 STEP 2 열가소성 가황물 용융 STEP 3 기타 재료와 혼합 및 블렌딩 STEP 4 고형화 및 펠릿 형태 성형 STEP 5 검사 및 포장 → Export ▾ 대만 중국 멕시코 최종 수출		
	상세 공정		일본
		중국	• 광안정제,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이산화티타늄 생산
		중국, 대만 또는 멕시코	• 일본 및 중국에서 생산된 재료 수입 • TPV를 용융 • 압출 공정을 통해 나머지 투입 재료와 혼합 및 블렌딩 • 혼합물을 고형화한 후 펠릿 형태로 성형 • 검사 및 포장
		기타 사항	• 최종제품 중량은 TPV 63%, 광유 35%, 기타 성분 2%로 구성 • 중국, 대만 또는 멕시코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에서 화학반응은 발생하지 않음

III 판정 결과

《CBP의 판정 ① - USMCA 특혜》

- ① 최종제품 생산을 위해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비원산지 재료가 협정에서 규정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3902호에 대한 USMCA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 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해당 물품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② 다만, 제39류의 물품으로서 하나 이상의 USMCA 국가 영역에서 일어난 다음 공정의 결과로 생성된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함

제39류의 물품은 희석제의 첨가를 제외하고, 미리 정해진 규격에 맞추기 위해 재료를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된 방식으로 혼합 또는 블렌딩(분산을 포함한다)하는 공정이 하나 이상의 USMCA 국가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 해당 물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투입재료와 다른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취급한다.

- 멕시코에서 수행되는 공정은 위 규정에 따라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된 혼합 또는 블렌딩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정에 따라 생산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임

→ USMCA 특혜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

《CBP의 판정 ② -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경우 USMCA 원산지 표시 판정》

- ①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19 C.F.R Part 102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제3902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국내산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4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해당 물품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② USMCA 원산지 표시 규정상 세트 상품을 제외하고 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상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단일 재료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함
- 일본산 TPV가 완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로 판단되므로, USMCA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일본임

→ USMCA 원산지 표시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일본

《CBP의 판정 ③ - 중국 또는 대만에서 수입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판정》

- ⊙ 일본산 TPV는 완제품 생산의 주된 재료로서 그 자체로 이미 프로필렌 엘라스토머로 간주되며, 중국 또는 대만에서 수행된 공정은 화학반응을 발생시키지 않고 TPV의 명칭, 특성 및 용도를 변화시키지도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일본임

→ 원산지 표시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일본

Ⅳ 시사점

- ⊙ 동일한 물품이라도 USMCA 특혜와 원산지 표시에는 서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며,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 기준 또한 USMCA 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법령이 적용되므로,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동일 물품에 서로 다른 원산지를 판정받을 수 있음
- ⊙ 폴리머에 광유, 기능성 첨가제를 혼합하고 용융, 압출, 펄릿화하여 물리적 성질이나 가공성을 개선하더라도, 주된 원재료인 폴리머가 이미 완제품과 동일한 계열의 물품이고 그 명칭·특성·용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PBAT 기반 플라스틱 혼합재료
사례번호	NY N341500 (2024.08.14.)
쟁점사항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중국, 태국, 인도 또는 파키스탄] - 중국에서 PBAT Neat 생산 - 태국에서 폴리락트산 생산 - 인도 또는 파키스탄에서 탈크 생산 • [한국] -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수입 후 계량하여 믹서로 혼합 - 한국산 탄산칼슘을 추가하여 혼합 - 냉각 및 펄릿 공정 수행 - 제습 및 건조 공정 수행 - 검사 및 포장 - 최종제품은 PBAT 70%, 폴리락트산 10%, 탄산칼슘 15%, 탈크 5%로 구성
판정 결과	• 중국산 PBAT Neat는 완제품의 70%를 구성하며, 한국에서 가공된 후에도 세번이 변경되지 않으며, CAS 번호도 동일하게 유지됨 • 한국에서 기타 성분을 첨가하여 PBAT의 기능이 향상되더라도 본래 기능과 용도는 변화하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PBAT의 원산지인 중국임

유의사항: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공정 등)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제초제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HQ H340257 (2024.12.05.)
- 쟁 점 사 항: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대만
- 최종 원산지: 대만



II 사실관계

용도	• 잡초를 방지하는 데 사용되는 제초제		
재료		중국	- 림설퓨론(Rimsulfuron) - 니코설퓨론(Nicosulfuron)
		기타 국가	• 분산제, 습윤제, 희석제 등 기타 불활성 성분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중국  림설퓨론 및 니코설퓨론 생산 Manufacturing ▾  대만  STEP 1 중국산 성분 수입 STEP 2 모든 성분을 믹서에 혼합 STEP 3 물 첨가 후 반죽 STEP 4 과립 형태로 제조 STEP 5 건조 후 체질 STEP 6 포장 및 라벨 부착 Export ▾  대만 최종 수출		
		중국	• 림설퓨론 및 니코설퓨론 생산
상세 공정		대만	• 중국산 성분 및 기타 불활성 성분을 믹서에 넣고 혼합 • 제트밀로 분쇄 후 다른 믹서에서 20~30분간 추가 혼합 • 혼합 분말 100kg당 물 15~16kg을 분사하여 반죽 • 반죽된 재료를 압출하여 과립 형태로 제조 • 건조 후 체질 • 포장 및 라벨 부착

III 판정 결과

《신청인의 주장》

⊙ CBP가 해당 제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제301조 추가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만에서 제조된 제초제의 원산지는 대만이라고 주장함

《CBP의 판정》

- ⊙ 대만 제조 공정에서 두 중국산 활성성분 또는 다른 성분 사이에 화학반응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러한 성분들을 혼합, 제형화하여 각각의 개별 성분과 구별되는 별도의 완제품인 제초제가 생산되므로, 각 원료가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판단하여 대만을 원산지로 판정함

→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대만

IV 시사점

- ⊙ 활성성분이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물품의 경우, 단일 활성성분을 단순 희석, 제형화하여 최종 사용 형태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복수의 활성성분을 결합하여 적용 범위나 효과가 확대된 새로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될 수 있음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살충제 및 제초제
사례번호	HQ 561330 (1999.07.02.)
쟁점사항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시나리오 I - 일본산 Pyridaben(CAS No. 96489-71-3)를 미국으로 수입 - 미국에서 Pyridaben을 일정 크기로 분쇄 - 분쇄된 물질과 분산제, 습윤제, 희석제 등과 혼합하여 최종제품 생산
	시나리오 II - 한국산 Quinclorac(CAS No. 84087-01-4)을 미국으로 수입 - Quinclorac을 분산제, 습윤제, 희석제 등과 혼합 - 혼합물을 일정 크기로 분쇄 후 과립화하여 최종제품 생산
	시나리오 III - 독일산 Bentazon(CAS No. 50723-80-3)을 미국으로 수입 - Bentazon과 미국산 활성성분인 Atrazine(CAS No. 1912-24-9), 분산제, 습윤제 등을 고전단 혼합기를 통해 혼합 - 혼합물을 일정 크기로 분쇄하여 최종제품 생산
	시나리오 IV - 독일산 Bentazon(CAS No. 50723-80-3)을 미국으로 수입 - 독일산 Bentazon과 미국산 Blazer®(CAS No. 62476-59-9), 물 등을 교반기를 통해 교반 - 여과 및 농도 조절을 통해 최종제품 생산

판정 결과

- 시나리오 1·2에서는 단일 활성성분이 제형 보조제와 혼합, 희석되어 최종 사용에 적합한 형태 또는 등급으로 변화할 뿐 활성성분의 본질적 정체성이 유지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반면 시나리오 3·4에서는 수입된 활성성분에 다른 활성성분을 결합함으로써, 각 활성성분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방제할 수 있는 식물의 종류가 증가하는 등 제초 효과의 범위가 확대 되므로, 특성과 용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 변형을 인정함

유의사항: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공정 등)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피부 보습 로션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NY N301202 (2018.11.02.)
- 쟁 점 사 항: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중국
- 최종 원산지: 중국



II 사실관계

용도	• 건조한 피부의 갈라짐·균열·가려움 등을 완화하기 위한 피부 보습 로션		
재료		싱가포르	• 디메티콘(dimethicone)
		중국	• 물 • 유화제, 방부제, 증점제, 추가 보습제, 향료, 글리세린, 오일 등 불활성 성분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싱가포르  디메티콘 생산 Manufacturing ▾  중국  STEP 1 싱가포르 디메티콘 수입 STEP 2 디메티콘을 물로 희석 STEP 3 기타 성분과 혼합 STEP 4 검사 및 포장 Export ▾  중국 최종 수출		
상세 공정		싱가포르	• 활성성분인 디메티콘 생산
		중국	• 디메티콘을 물로 희석 • 유화제·방부제·증점제·오일·추가 보습제·향료 등의 성분과 정해진 비율로 혼합 • 최종제품 생산

III 판정 결과

《신청인의 주장》

- ☑ 싱가포르산 디메티콘이 유일한 활성성분이고 중국에서는 이를 물 및 기타 성분과 단순 혼합할 뿐이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싱가포르임

《CBP의 판정》

- ⊙ 디메티콘은 그 자체로 다양한 산업·제품에 사용될 수 있어, 중국으로 수입되는 시점에는 최종제품인 피부 보습 로션으로서의 구체적인 특성과 용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음
- ⊙ 최종제품은 디메티콘 외에도 물, 유화제, 방부제, 증점제, 오일, 추가 보습제 및 향료 등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며, 중국에서 이들 성분을 정해진 비율로 배합함으로써 원재료인 디메티콘과 구별되는 완성된 피부용 로션의 특성과 용도가 형성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 원산지 표시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

Ⅳ 시사점

- ⊙ 혼합·희석 공정의 실질적 변형 여부는 공정의 형식이나 화학반응 발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혼합 후에도 주원료가 완제품의 본질적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또는 여러 성분의 정해진 배합을 통해 원재료와 구별되는 특성과 용도를 가진 새로운 완제품이 형성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향수
사례번호	HQ H304539 (2020.04.20.)
쟁점사항	원산지 표시 및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미국] - 여러 화학성분을 혼합하여 향수 오일 베이스 생산 • [중국] - 오일 베이스 12%, 에틸알코올 및 물 88%의 조성이 되도록 혼합하여 희석 - 전용 용기에 담아 포장
판정 결과	• 미국산 향수 오일 베이스가 완성된 향수의 본질을 형성하며, 중국에서는 이를 물과 에틸알코올로 희석하여 사용 가능한 농도로 조정할 뿐 화학적 정체성과 특성이 유지되고 별개의 상거래 물품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미국임

유의사항 :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공정 등) 및 최종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콘크리트용 혼화제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NY N342276 (2024.09.18.)
- 쟁 점 사 항: 제301조 목적의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캐나다
- 최종 원산지: 캐나다



II 사실관계

용도	• 포틀랜드 석회석 시멘트를 함유한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우수한 작업성을 가진 고유동 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고성능 감수제		
재료		미국	• 소포제(Defoamer) • 살생물제(Biocide)
		캐나다	• 물(Water) • 청색 착색제(Blue Colorant)
		중국	• 폴리카르복실레이트 에테르 기반 폴리머(PCE)
		독일	• 기포방지제(Antifoam)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미국  소포제 및 살생물제 생산 Manufacturing  캐나다  STEP 1 비캐나다산 원료 수입 STEP 2 물과 PCE를 1차 교반 STEP 3 소포제, 기포방지제를 추가하여 2차 교반 STEP 4 착색제를 추가하여 3차 교반 STEP 5 살생물제를 추가하여 4차 교반 STEP 6 품질검사 및 포장 Export  캐나다 최종 수출		
상세 공정		미국, 중국, 독일	• 소포제, 살생물제, 기포방지제, 폴리머 등 원료 생산
		캐나다	• 혼합기에 물과 PCE를 사전에 정해진 양만큼 투입하고 1차 교반 • 혼합기에 소포제와 기포방지제를 사전에 정해진 양만큼 투입하고 2차 교반 • 청색 착색제를 첨가하고 3차 교반 • 살생물제를 첨가하고 4차 교반 • 품질검사 및 포장
		기타 사항	• 혼합기에 투입되는 각 원료의 양은 최종제품에서 요구되는 고형분 함량을 달성하도록 사전에 결정됨 • 최종제품은 pH, 고형분 함량, 비중, 색상 및 IR 스펙트럼에 관한 품질관리 기준값을 가지고 있음

III 판정 결과

《CBP의 판정》

- ⊙ CBP는 일반적으로 화학반응을 수반하지 않고 추가적인 가공도 없는 상태에서 두 물질을 다른 국가에서 단순히 혼합하는 것만으로는 그 다른 국가의 제품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함
- ⊙ 다만, 특정한 유형의 혼합 공정에서는 그 구성 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명칭, 특성 및 용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음
- ⊙ 본 사례에서는 캐나다에서 수행된 일련의 배합·혼합 공정을 통해 개별 구성성분이 새로운 명칭, 특성 및 용도를 가진 상이한 상거래 물품으로 전환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캐나다로 판정함

➔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캐나다

IV 시사점

- ⊙ 단순한 혼합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전에 정해진 배합비와 특정 조건에 따라 여러 원료를 혼합·제형화하여 개별 원재료와 구별되는 명칭·특성·용도 및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완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될 수 있음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유체용 첨가제
사례번호	HQ H341787 (2025.05.13.)
쟁점사항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미국] - 광유 생산 • [독일] - 안정성 향상제 생산 • [중국] - 잔탄검 생산 • [캐나다] - 캐나다에서 광유 73.4%, 안정성 향상제 2%, 잔탄검 24%, 물 0.06% 비율로 혼합하여 최종 제품 생산
판정 결과	• 캐나다에서 생산된 최종제품은 그 원료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각 원료들은 혼합을 통해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유체용 첨가제라는 특정 용도에 적합한 제품이 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캐나다임

유의사항: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공정 등)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Ⅲ 정 제

정제에 따른 순도 등급 향상만으로도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새로운 물품으로의 전환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사례 선정

3-1. 분석용 등급 아세토니트릴

3-2. 정제 설탕

3-3. 산화방지제

3-4. 해바라기유·카놀라유 혼합 오일



분석용 등급 아세토니트릴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HQ H265712 (2015.09.18.)
- 쟁 점 사 항: 정부조달 목적의 원산지 판정
- 최종 가공국: 미국
- 최종 원산지: 중국



II 사실관계

용도	정밀 화학분석 장비에 사용되는 용매·시약으로 의약품 개발 및 생산, 식품안전, 임상시험 및 환경 시험 등을 위한 화학물질 분석에 사용되는 재료		
재료		중국	거친 상태의 상업용 등급 아세토니트릴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중국  상업용 등급 아세토니트릴 생산 → Manufacturing ▾  미국  STEP 1 중국산 원료 수입 STEP 2 중국산 원료 동결 STEP 3 순수 아세토니트릴 추출 및 정제 STEP 4 분석 및 등급 측정 STEP 5 포장 → Domestic distribution ▾  미국 국내 유통		
상세 공정		중국	순도가 95% 미만일 수 있고 물 등의 불순물을 포함하는 거친 상태의 상업용 등급 아세토니트릴 생산
		미국	- 거친 상태의 상업용 등급 아세토니트릴을 동결 - 동결된 덩어리에서 순수 아세토니트릴 추출 및 정제 - 정제된 아세토니트릴 분석 및 생산 등급에 맞는 순도 확인 - 특수 유리병 세척, 충전 및 포장
	기타 사항		완성된 정제 아세토니트릴은 순도가 최대 99.5%이며, 불순물을 거의 함유하지 않음

III 판정 결과

《신청인의 주장》

- ☑ 신청인은 미국에서 수행되는 정제 공정으로 인해 수입된 상업용 등급 아세토니트릴이 실질적으로 변형되므로, 최종 분석용 등급 아세토니트릴의 원산지를 미국으로 주장함

- **(명칭)** 미국으로 수입될 당시 제품은 “crude” 또는 “commercial grade” 아세토니트릴로 불리는 반면, 정제 후에는 “purified” 또는 “analytical grade” 아세토니트릴로 불리므로 명칭이 변경됨
- **(특성)** 수입된 상업용 등급 아세토니트릴은 산업 제조 공정의 부산물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반면, 정제된 제품은 실험실용 시약(laboratory reagent)의 특성을 가지므로 제품의 특성이 변경됨
- **(용도)** 상업용 등급 아세토니트릴은 산업공정의 용매로 사용할 수 있으나, 불순물로 인해 시험장비가 손상되거나 측정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정밀 분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반면, 정제된 분석용 등급 아세토니트릴은 정밀 분석시험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용도가 변경됨
- **(기타 사항)** 미국에서 수행되는 정제 공정은 일반적인 20,000리터 배치 기준 약 4일이 소요되며, 정교하고 고가인 전문 설비와 정밀 시험장비 및 최소 이학사 학위를 보유한 과학자 등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함

《CBP의 판정》

- ⊙ CBP는 거친 상태의 물질에 대한 단순한 정제(refining) 또는 정화(purification)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를 가진 별개의 상거래 물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기존 판정 원칙을 적용하여, 미국에서의 정제 공정이 아세토니트릴의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종 분석용 등급 아세토니트릴의 정부조달 목적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판정함
 - **(명칭)** “crude”, “commercial grade”, “purified”, “analytical”은 모두 “아세토니트릴”이라는 제품명을 수식하는 형용사에 불과하며, 정제 전후 모두 제품명 자체는 아세토니트릴로 동일함
 - **(특성)** 미국에서의 정제 과정에서는 화학반응이나 물리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불순물만 제거되므로, 정제 전후 아세토니트릴의 본질적 특성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음
 - **(용도)** 정제 전 제품은 산업용 용매로 사용되고, 정제 후 제품은 주로 분석시험에 사용되므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한 종류의 산업적 용도에서 다른 종류의 산업적 용도로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 변형을 인정할 만큼 중대한 용도의 변화는 아님

→ 정부조달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

IV 시사점

- ⊙ 정제·정화 공정을 통해 순도, 등급 또는 사용가능한 범위가 향상되더라도, 이러한 공정이 단순히 불순물, 수분 제거에 그쳐 원재료의 화학적 정체성과 본질적 특성이 유지되고 새로운 상거래 물품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기 어려움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무수 에틸알코올
사례번호	HQ 558852(1994.12.21.)
쟁점사항	실질적 변형 인정 여부
사실관계	• [유럽 및 기타 국가] - 거친 상태의 고산성 에틸알코올 원료 생산 • [이스라엘] - 공비증류(azeotropic distillation)를 통해 수입 원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에틸알코올을 농축하여 정제 함수 에틸알코올 생산 - 분자체 기술을 이용하여 물을 제거해 무수 에틸알코올 생산
판정 결과	• 명칭: 수입된 거친 상태의 에틸알코올과 무수 에틸알코올은 모두 본질적으로 에틸알코올이며, 순도나 도수 차이만 있을 뿐 새로운 명칭을 가진 물품으로 변하지 않음 • 특성: 공비증류 및 분자체 공정에서 화학반응이나 새로운 화합물의 생성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물과 불순물만 제거된 것이므로, 특성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음 • 용도: 원료 및 생산된 최종제품은 모두 음용 혼합물 및 산업용 용매 등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본질적인 용도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유의사항: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공정 등)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정제 설탕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HQ 082033 (1989.09.05.)
- 쟁 점 사 항: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캐나다
- 최종 원산지: 호주



II 사실관계

용도	• 식용 정제 설탕		
재료		호주	• 원당
	기타 국가		• 시럽 • 석회 • 이산화탄소 등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호주  사탕수수로부터 원당 생산 → Manufacturing ▾  캐나다  STEP 1 호주산 원당 수입 STEP 2 시럽 첨가 후 가열 및 혼합 STEP 3 원심분리를 통한 불순물 분리 STEP 4 석회 및 이산화탄소 처리 STEP 5 침전물 및 색소 제거 STEP 6 결정화, 체질 및 포장 → Export ▾  캐나다 최종 수출		
	상세 공정		호주
		캐나다	• 원당에 시럽을 첨가하여 가열 및 혼합 - 혼합물을 원심분리하여 시럽과 당밀 등 원당 결정 외의 성분을 분리 - 원당 결정을 물에 녹여 당액으로 만든 후 석회·이산화탄소 처리 - 여과 및 이온교환을 통해 침전물과 색소 제거 - 정제된 당액을 결정화한 후 원심분리 및 세척 - 설탕 결정을 열풍 건조한 뒤 체질 및 크기 선별 - 포장

III 판정 결과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캐나다에서 수행된 정제 공정으로 인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제품의 원산지가 캐나다라고 주장함

- **용도:** 원당은 에탄올 생산이나 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고, 정제 공정을 거쳐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용도가 변화함
- **특성:** 원당 결정은 정제 설탕과 특성이 상이함
- **상업적 정체성 변화:** 시장에서 원당과 정제당은 서로 구별되는 제품으로 취급됨

《CBP의 판정》

- ⊙ CBP는 캐나다에서의 정제 공정이 호주산 원당을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를 가진 별개의 물품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호주로 판정함
- 정제 공정은 불순물과 부산물을 제거하여 자당의 순도를 높이는 공정으로, 이 공정에서 자당 분자 자체는 변화하지 않으며, 설탕의 핵심 특성인 단맛과 영양가는 이미 원당 상태에서 존재함에 따라 정제로 인해 색상과 순도가 개선되더라도 본질적 특성은 유지됨
- 설탕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캐나다의 정제 공정이 아니라 사탕수수로부터 원당을 생산하는 공정이므로, 해당 공정이 수행된 호주가 원산지임

→ 실질적 변형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호주

IV 시사점

- ⊙ 정제로 순도, 상품성이 향상되더라도 원재료의 본질적 특성과 용도가 유지되면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화학반응을 통해 새로운 특성과 용도의 물질로 전환되면 실질적 변형이 인정될 수 있음

CBP의 참고 판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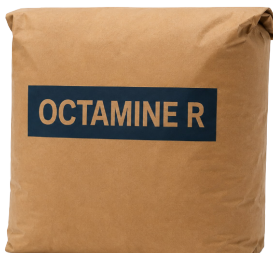
물품명	전환당 시럽
사례번호	HQ 951130 (1992.06.09.)
쟁점사항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호주] - 사탕수수로부터 원당 생산 • [캐나다] - 원당 정제 후 물에 용해하여 가열 - 농축 염산을 첨가한 후 가열, 교반하여 가수분해 수행 - 수산화나트륨 및/또는 탄산나트륨을 첨가하여 반응 중지 - 위 가수분해 공정을 통해 자당을 과당과 덱스트로스로 전환 - 최종제품 생산
판정 결과	• 단순 정제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으나, 캐나다에서의 가수분해를 통해 자당이 과당과 덱스트로스로 전환되어 자당과 다른 용도를 가진 새롭고 상이한 상품이 생성되므로, 캐나다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됨

유의사항 :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공정 등) 및 최종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산화방지제 (Octamine R)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HQ 556143 (1992.03.02.)
- 쟁 점 사 항: 실질적 변형 여부
- 최종 수출국: 바하마
- 실질적 변형 여부: 불인정



II 사실관계

용도	고무, 플라스틱을 열, 산소 및 반복 굴곡에 따른 균열로부터 보호하는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며, 항공용 윤활제에도 사용됨	
재료	기타 국가	- 다이소부틸렌 (diisobutylene) - 디페닐아민 (diphenylamine) - 수산화암모늄 - 염화알루미늄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기타 국가  다이소부틸렌, 디페닐아민 등 생산 Manufacturing 바하마  STEP 1 외국산 원료 수입 STEP 2 화학반응을 통해 Crude Octamine 제조 STEP 3 정제 공정 수행 STEP 4 Octamine R 생산 Export 바하마 최종 수출	
상세 공정	기타 국가	다이소부틸렌, 디페닐아민, 수산화암모늄 등 생산
	 바하마	- Crude Octamine 제조 - 외국산 다이소부틸렌과 디페닐아민을 반응기에 투입 후 염화알루미늄을 촉매로 사용하여 화학반응 수행 - 반응물을 수산화암모늄 및 온수로 세척 - 순도 85~87%의 디옥틸디페닐아민인 Crude Octamine 생산 - Crude Octamine을 Octamine R로 정제 - Crude Octamine을 냉각 후 다이소부틸렌을 첨가하여 결정화 - 결정물을 원심분리하고 세척 및 건조 - 최종적으로 순도 95~97%의 디옥틸디페닐아민인 Octamine R 생산

III 판정 결과

《신청인의 주장》

- Crude Octamine은 약 13~15%의 불순물을 함유한 저등급 항공용 윤활제로 사용되는 제품이지만 바하마에서 광범위한 정제 공정은 Crude Octamine을 순도 최소 95%의 고등급 항공용 윤활제인 Octamine R으로 변형시키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CBP의 판정》

- ⊙ 외국산 다이소부틸렌과 디페닐아민 등을 바하마에서 화학반응시켜 Crude Octamine을 제조하는 공정은 원재료를 고유한 화학적 성질과 상업적 정체성을 가진 별개의 화학제품으로 전환하며, 최종제품이 원료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 및 화학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함
- ⊙ 다만, 화학물질을 단순히 정제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화학물질이 새로운 명칭, 특성 및 용도를 가진 새롭고 상이한 상거래 물품으로 변형되지 않음
- ⊙ 정제 공정을 통해 Crude Octamine이 Octamine R이라는 고등급 항공용 윤활제가 되는 것은 명백하지만, 본질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으며, Octamine R은 Crude Octamine과 동일한 화학구조, CAS 번호, HS Code를 가지므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음

➔ Crude Octamine을 Octamine R로 정제하는 것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IV 시사점

- ⊙ 정제로 순도, 등급이 향상되더라도 원재료의 본질적 특성이 유지되면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종류 등 정제 공정을 통해 명칭, 특성 및 용도가 다른 새로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될 수 있음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제트연료
사례번호	HQ H292678 (2018.11.23.)
쟁점사항	정부조달 목적의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미국 또는 멕시코] - 중간 등급의 석유 원유(Crude Oil) 생산 • [인도] - 미국산 또는 멕시코산 원유를 탈염 및 가열 증류하여 직류 유분 생산 - Merox Oxidation 장치를 이용하여 황 성분 제거 - 특정 첨가제 투입 - 미국 국방군수청 규격을 충족하는 JP5 제트연료 생산
신청인 주장	• 미국 국방군수청이 요구하는 특정 첨가제를 넣는 것 외에는 어떠한 화학적 혼합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인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판정 결과	• 원유는 인도에서 탈염, 가열 증류 및 Merox 황 제거 공정을 거쳐 원유와 명칭, 특성 및 용도가 다른 제트연료로 전환되며, 특히 CBP 산하 실험실은 석유정제 공정인 증류를 통해 원유가 제트연료로 실질적으로 변형된다고 판단함

유의사항: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공정 등) 및 최종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해바라기유·카놀라유 혼합 오일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NY N330420 (2023.02.14.)
- 쟁 점 사 항: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튀르키예
- 최종 원산지: 우크라이나



II 사실관계

용도	• 튀김 및 기타 식품용		
재료		우크라이나	• 해바라기유 • 카놀라유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우크라이나  해바라기씨유 (Sunflower Oil)  카놀라유 (Canola Oil) 해바라기씨유, 카놀라유 생산 Manufacturing ▾  튀르키예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우크라이나 오일 수입 정제 공정 수행 혼합 공정 수행 벌크 포장 Export ▾  튀르키예 최종 수출		
상세 공정		우크라이나	• 해바라기씨와 카놀라씨 재배 및 수확 • 불순물 제거 후 압착하여 해바라기유와 카놀라유 생산
		튀르키예	•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유와 카놀라유 정제 • 정제된 해바라기유와 카놀라유를 혼합 • 벌크 포장

III 판정 결과

《CBP의 판정》

- ☑ CBP는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유와 카놀라유를 튀르키예에서 정제·혼합하는 공정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산지 표시 목적상 최종 혼합유의 원산지를 우크라이나로 판정함

➔ 원산지 표시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우크라이나

Ⅳ 시사점

- ⊙ 식물성 유지류의 경우 씨앗에서 오일을 추출하여 원재료와 구별되는 새로운 상거래 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은 실질적 변형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미 생산된 식물성 오일을 추가로 정제·혼합하는 정도의 가공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아로마테라피 제품
사례번호	NY N344934 (2025.01.30.)
쟁점사항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인도] - 천연 멘톨 결정, 유칼립투스 잎 오일, 윈터그린 잎 오일, 정향 줄기 오일 생산 • [중국] - 천연 장뇌 분말, 테레빈수 수피 오일, 페퍼민트 잎 오일 생산 • [스리랑카] - 인도산 블랙커민씨를 가공하여 블랙커민씨 오일 생산 - 여러 원료를 정해진 배합식에 따라 혼합 - 혼합물을 용기에 충전하고 밀봉 및 포장
판정 결과	• 스리랑카에서 인도산 블랙커민씨로부터 오일을 추출하는 공정은 씨앗과 구별되는 새롭고 상이한 상거래 물품인 블랙커민씨 오일을 생산하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블랙커민씨 오일의 원산지는 스리랑카로 판정됨 • 다만, 중국, 인도, 스리랑카산 원료를 스리랑카에서 정해진 배합식에 따라 혼합, 충전, 포장한 후에도 각 원료의 기본적인 특성이 본질적으로 유지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최종 소매포장 및 용기에 “Product of China, India, and Sri Lanka”로 표시할 것을 권고함

유의사항 :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과정 등) 및 최종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ORIGIN CASE

Vol.
16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